제정 2007년 1월 12일 조례 제 909호 일부개정 2016년 2월 5일 조례 제1453호 (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) 전부개정 2018년 4월 16일 조례 제1651호 (제명개정) 일부개정 2018년 5월 11일 조례 제1663호 (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) 일부개정 2020년 9월 28일 조례 제1819호 (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) 일부개정 2022년 12월 22일 조례 제2024호 일부개정 2024년 2월 8일 조례 제2143호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, 제26조의5의 규정에 따라 오산시 자활기금을 설치하고,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〈개정 2022. 12. 22, 2024. 2. 8〉
- 제2조(기금의 설치 및 조성) ① 오산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생활이 어려운 주민의 생활안정과 자활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오산시 자활기금(이하 "기금"이라 한다)을 설치한다.
 -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 〈개정 2024. 2. 8〉
 - 1. 오산시(이하 "시"라 한다)의 출연금
 - 2. 시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
 - 3. 삭제〈2024. 2. 8〉
 - 4.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
 - 5.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
 - 6. 자활근로의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
 - 7. 기금의 운용 및 그 밖의 수익금

제3조 삭제〈2022. 12. 22〉

- **제4조(기금의 용도)**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. 〈개정 2024. 2. 8〉
 - 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26조의4에 따른 용도(단.

제8호의 경우는 제외)

- 2.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하여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 사업비 등 지원
- 3. 지역자활센터 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 및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장 설치·운 영 및 자격증 취득비 등 교육비 지원
- 4.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 지원
- 5.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의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컨설팅 지원
- 6.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한시적 지원
- 7. 그 밖에 시장이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 또는 자활지원을 위한 복지증진 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- **제5조(지원대상)** 기금의 지원대상은 시에 거주하거나 소재하고 있는 개인·기관·법 인·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 〈개정 2022. 12. 22, 2024. 2. 8〉
 - 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(이하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2호의 수급자 및 법 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
 - 2.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
 - 3.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
 - 4.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및 단체 등
 - 5.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ㆍ기관 및 단체 등
 - 6. 법 제18조의6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
 - 7. 그 밖에 시장이 지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개인ㆍ기관 및 단체 등
- 제6조(지원신청·변경) 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야 한다.
 - 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 사업을 변경하거나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.
- 제7조(자금의 대여) ① 지원신청자에 대한 자금의 대여금액은 지원신청자의 사업규모,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제16조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

- 동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시장이 결정한다. 이 경우 타당성 검토를 중앙·광역자활센터 등 자활지원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른 상환기한, 대여이율, 자금의 대여한도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. 다만, 대여이율은 오산시금고(이하 "시금고"라 한다)의 예금이율 이내로 하여야 한다.
- ③ 대여자금의 이자 상환기한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이자율은 시금고의 연체금리 이내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.
- 제8조(자금의 상환) ① 시장은 시설·장비설치 사업자금 및 전세점포 임대자금 등을 대여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.
 - 1.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경우
 - 2.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3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
 - 3. 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
 - 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
 - ② 삭제〈2024. 2. 8〉
 - ③ 삭제〈2024. 2. 8〉
- 제9조(사회보험료 지원) ① 시장은 제4조제1호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경우 근로·사업소득 등의 증가로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지된 가구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회보험의 종류, 본인 부담분에 대한 지원비율, 지원기간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- 제10조(이차보전) ① 자활기업에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대여자금 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이를 보전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 및 보전비율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.
 -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자의 차액을 보전 받는 자활기업이 제8조제1항의 각 호의
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자차액 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.

- 제11조(신용보증) 영 제26조의4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에 필요한 비용은 「지역신용보증재단법」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.
- 제12조(기금의 운용·관리)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.
 - ②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정을 따로 설치하여 관리·운용한다.
 - ③ 제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, 시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. 〈개정 2020. 9. 28〉
 - 1. 금융기관에 예치
 - 2. 국채, 공채, 그 밖에 유가증권의 매입
 - 3. 「오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통합 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
 - 4. 그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
- 제13조(기금관리공무원)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·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.
 -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, 기금출납원은 기금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.
 - ③ 「지방회계법」 및 「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」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,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.
- 제14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)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,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 -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 - 1.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
 - 2. 당해 연도 기금 사용계획
 - 3.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 -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

마다 오산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· 의결을 받아야 한다.

- 제15조(지원금 사후관리) ①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지원 받은 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기금사용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회계연도 중사업을 종료하였을 때에는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기금사용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결과 기금을 지원목적 및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한 자에게 보조지원의 경우에는 지원금을 반납하게 할 수 있으며, 대출지원의 경우에는 상환기한에 이르기 전에 대출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.
- 제16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·운영) ① 기금의 운용·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- 1.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
 - 2.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
 - 3. 기금의 주요항목 및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
 - 4. 기금 사용 신청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 및 승인사항
 - 5. 그 밖에 기금의 관리 · 운용에 관한 사항
 - ② 제1항의 위원회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오산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. 〈개정 2018. 5. 11, 2024. 2. 8〉
- 제17조(관계규정의 준용)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「오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을 준용한다.〈개정 2024. 2. 8〉 제1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〈2018. 4. 16 조례 제1651호 전부개정〉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① 종전의 「오산시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에 따라 조성된 자금과 상환 중인 융자금 및 수익금은 이 조례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오산시 자활기금에 이입 조치한다.

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「오산시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에 따라 대여한 융자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융자한 것으로 본다. 다만, 융자조건 등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제3조(다른 조례의 개정) 「오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제10호 중 "「오산시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제5조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"을 "「오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제16조에 따른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"으로 한다.

부칙〈2018. 5. 11 조례 제1663호,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〉 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폐지) 「오산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 운영 조례」는 폐지한다.

제3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생략

②「오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6조제2항 중 "오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"를 "오산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"로 한다.

③ 및 ④ 생략

부칙〈2020. 9. 28 조례 제1819호,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〉 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제3조 생략

제4조 생략

제5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오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

- 3. 「오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통합 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
- ② 부터 ⑨ 까지 생략

부칙〈2022. 12. 22 조례 제2024호〉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〈2024. 2. 8 조례 제2143호〉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